

#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전부개정(안)

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.

## 파주도시관광공사 정관

제정 2020.06. . 정관 제1호

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파주도시관광공사는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과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(이하“조례”라 한다)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과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공사의 명칭은 파주도시관광공사(이하“공사”라 한다)라 한다. 영문으로는 Paju Urban Tourism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.

**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**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휴암로 11(위전리 598-4번지)에 두고,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파주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**제4조(자본금)**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,000억원으로 하고 납입자본금은 27억 4백만 원으로 하며, 파주시(이하“시”라 한다)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② 자본금의 규모 및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.

**제5조(광고방법)** 공사가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www.pajuutc.or.kr)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파주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. 다만, 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.

**제6조(규정의 제정)** ①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하여 운영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과 이에 따른 내규의 제·개정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제2장 사 업

**제7조(사업)** ①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·개발·공급·임대 및 관리
2.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·개량·공급·임대 및 관리
3. 관광지, 리조트 등 위락단지과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
4. 도로·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
5.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에 따른 정비사업
6. 『도시개발법』에 따른 도시개발사업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(설계 및 감리 포함)
8.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
9.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
10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행 및 위탁 사업

②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 운영한다.

1. 파주시 문화시설 관리 운영
2. 관광시설 관리 운영
3.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주차장 관리 운영
4. 환경순환센터 관리 운영
5.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사업 관리 운영
6. 노면·자유로 환경 관리 운영
7.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
8.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

③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

④ 공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일부를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출자할 수 있다.

**제8조(대행사업비의 비용부담)** ① 공사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상호 위·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「지방공기업법시행령」(이하“영”이라 한다)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조치 한다.

**제9조(사업계획서)**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받아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**제10조(사업의 집행)**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2.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
3. 요금, 사용료, 분양가격 등 결정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11조(사업구역)**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외 다른 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.

### 제3장 임원 및 직원

**제12조(임원)**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.

② 임원중 사장 1인과 이사 2인을 상임으로 하고,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, 비상임이사 중 2명은 시의 공사 업무 담당 국장 및 도시개발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비상임이사는 세무·회계·법률·경영·행정·건축·토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한다.

③ 감사는 시의 회계부서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
④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사장·감사·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며, 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감사 또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

**제13조(임기)**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.

③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.

**제14조(임원추천위원회)**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되, 비상설위원회로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3에 의한다.

- ③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.
-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.
- ⑥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15조(임원의 직무)**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-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.
- ③ 경영본부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.

**제16조(하부조직)** 공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구 및 정원은 별표1, 별표2와 같다.

**제17조(직원의 임면)** ①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.

-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, 업무의 성격,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 할 수 있다.

**제18조(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)** ① 임원의 결격사유는 법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른다.

- ② 직원의 결격사유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결격사유에 따른다.
- ③ 공사의 임직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퇴직된 임·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
**제19조(임·직원의 복무)** 임·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**제20조(임·직원의 겸직 제한)**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상임임원은 시장의,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**제21조(임·직원의 보수)** ①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보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받는다.

- ② 비상임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자기소관 사무(소속기관 사무 포함)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을 제외한 비상임 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.

**제22조(비밀누설의 금지등)** 공사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23조(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)**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

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,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.

**제24조(대리인의 선임)** 사장은 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**제25조(고문)** ①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고문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 고문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한다.

③ 고문의 활동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26조(신분보장)** 공사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.

## 제4장 이사회

**제27조(이사회 설치 및 구성)**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28조(의결사항)**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4. 조직,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5.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한 의안
7. 신주의 발행,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
8. 증자, 감자에 관한 사항
9. 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
10. 자금의 장·단기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한 사항
11. 중요한 재산의 취득, 처분과 기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
12.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·수탁에 관한 사항
13. 재산 재평가액의 확정
14. 그 밖에 공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

**제29조(의결권의 제한)**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.

**제30조(의장 및 소집)**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하며,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.

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,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

**제31조(의결방법)**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1.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
2. 예산과 결산의 승인
3. 정관 변경
4. 조직·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**제32조(재심요청)**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33조(서면결의)**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며 의결할 수 있다.

**제34조(의사록 작성)**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.

## 제5장 재 무 회 계

**제35조(사업연도)**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.

**제36조(예산)**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예산서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예산이 확정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공사는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**제37조(결산)**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완료

하여야 한다.

② 사장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영 제36조에 따른 서류와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보고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**제38조(회계처리의 원칙)** ① 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**제39조(손익금의 처리)**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.

1. 이월결손금의 보전
2. 이익준비금의 적립
3. 감채적립금의 적립
4.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
5.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

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1.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
2. 이익준비금으로 보전
3. 결손금으로 차기이월

**제40조(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)** ①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공사에 귀속한다.

**제41조(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)** ① 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
2. 국가나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

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국가나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.

**제42조(기금조성 등)**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**제43조(선수금)**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 받으려는 자로부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44조(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)**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("물품"을 포함한다)을 무상대부("무상사용수익"을 포함한다)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제6장 사채 등 발행

**제45조(사채의 발행 등)** ①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채의 발행목적
2. 사채의 발행시기
3. 발행총액
4. 권종별 액면금액
5. 이율
6.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
7.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
8. 모집 및 인수방법

③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1. 사채의 번호
2. 법인의 명칭
3. 발행 년월일
4.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

**제46조(차관)**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.

**제47조(자금차입)**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

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,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.



## 제7장 보 칙

**제48조(정관의 변경)**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49조(공무원 파견요구 등)** ① 사장은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50조(준용)**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는 법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공사가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)**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파주시시설관리공단(이하“공단”이라 한다) 임원은 이 정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임원으로 본다.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이 정관 시행 당시 공단 직원은 이 정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.

**제3조(권리·의무의 승계)** ① 공사는 설립등기일로부터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·채무, 고용관계, 그 밖의 권리·의무를 포괄 승계한다.

② 공사는 공단의 재산을 승계하며,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하고,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때 시장의 승인은 공단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.

1. 승계재산의 범위
2. 승계재산의 목록
3. 승계재산의 금액
4.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

**제4조(최초의 사업연도)** 공사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사의 설립 일부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.

**제5조(예산에 관한 경과조치)** ① 이 정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공단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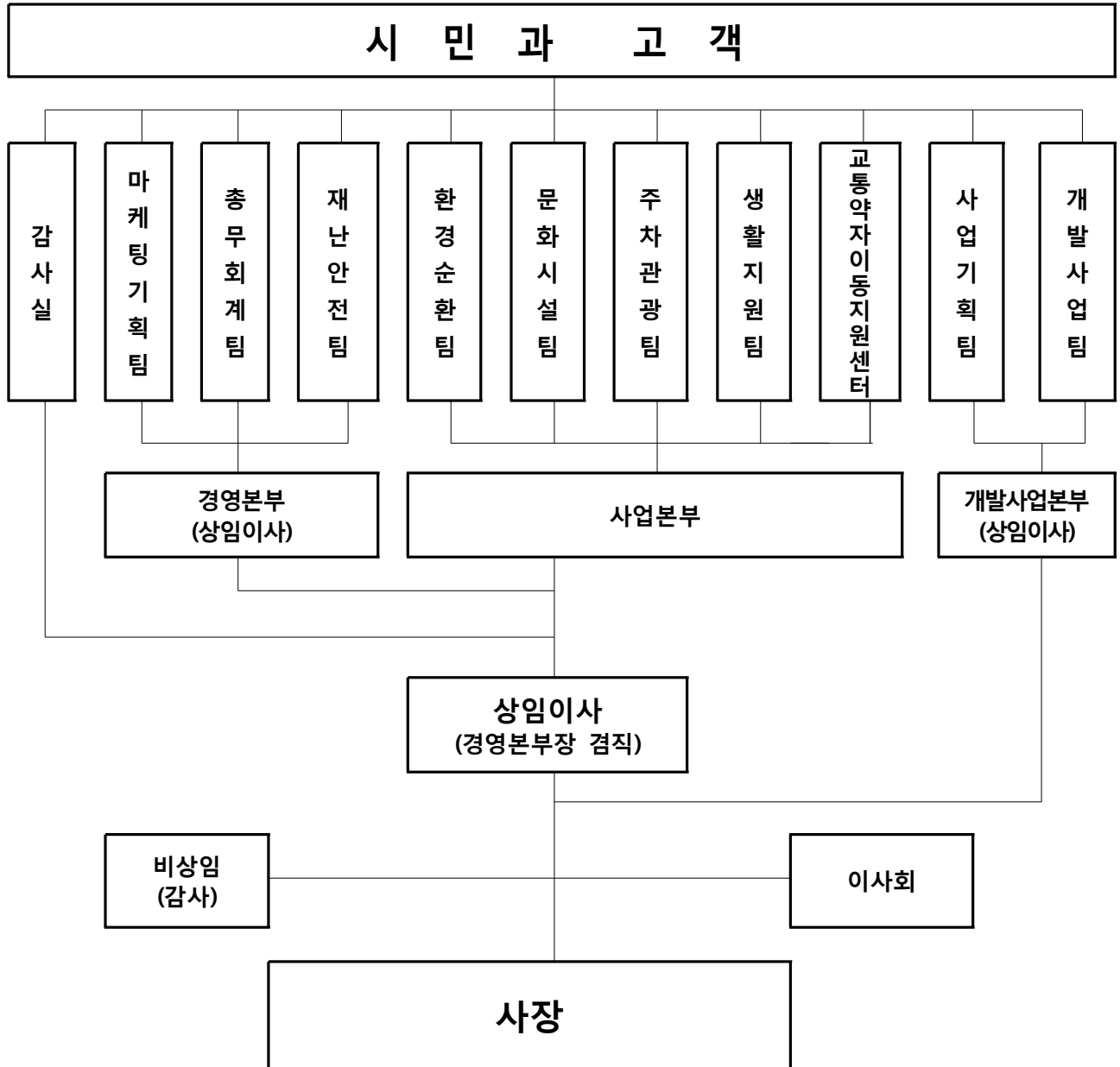
② 공사는 설립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,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사업에 관한 경과조치)** 이 정관 시행 전에 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.

[별표 1]

## 파주도시관광공사 기구표 (제16조 관련)

3본부 1실 9팀 1센터



[별표 2]

**파주시관광공사 정원표** (제16조 관련)

직위·급		정원	비 고
합 계		238	
임원	사장	1	
	상임이사	2	
일반직	소계	235	
	3급	1	
	4급	11	
	5급	31	
	6급	44	
	7급	42	
	8급	53	
	9급	53	

소관부서		마케팅기획팀 ☎950-1821
입안자	경영본부장	오기정
	마케팅기획팀장	유종빙
	담당자	권설희